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09910(본소), 2015다209927(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소유권이전등기]

재판경과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09910(본소), 2015다209927(반소)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2. 6 선고 2013나2025154(본소), 2014나2009623(반소)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0. 17 선고 2012가합78042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1. A

2. B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목포시

판결 선고 2015. 12. 10.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2. 6. 선고 2013나2025154(본소), 2014나2009623(반소)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N

이 유

1. 원고(반소피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들의 피상속인인 망 E는 이 사건 1, 2 토지에 대한 도로지정 이전에 이미 인근 토지 거주자를 위하여 위 토지들을 도로로 제공하고 소유자로서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1, 2 토지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변론주의 위배나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15 내지 20 토지의 경우에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를 악의의 수익자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위 각 토지를 점유한 때부터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반면에 이 사건 3 내지 14 토지의 경우에는 피고를 악의의 수익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로부터 적법한 이행청구를 받은 날인 2013. 9. 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13. 9. 9.의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인정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부당이득반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면허조건 및

연장허가조건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이 대한민국이나 피고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거나 공유수면 매립지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라고 보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다.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의 이 사건 3 내지 20 토지의 소유 경위와 보유기간, 인근 다른 토지들과의 관계, 주위 환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토지가 택지 지구 내부에 군데군데 형성된 전형적인 소로로서 인근 토지에서 공로에 이르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이에 대한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나 매립면허조건의 법률효과 등에 관한 법리오해나 이유모순 등의 잘못이 없다.

라.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원심에 이르러 이 사건 매립면허조건 및 연장허가조건에 따라 이 사건 13, 14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의 소유권이 대한민국에 귀속되었다거나 대한민국 또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이 사건 반소에 관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만 심리하여 온 제1심의 소송과정에 비추어 볼 때 대한민국이나 피고가 위 피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부분이 충분히 심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원고들이 피고의 반소제기에 대하여 명확히 부동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2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항소심에서의 반소제기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권순일

대법관김용덕

주심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신